

1 창업 및 사업장신설 · 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설계

-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 연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그 취지가 상이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정책적으로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감면 취지에 맞춘 감면 업종 신설
※ 기존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외 야영장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 추가

구 분	창업중소기업 감면(「지특법」 §58의3)	인구감소지역 감면(「지특법」 §75의5)
감면취지	창업 비용 경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도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 유입
감면 대상	창업 기업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신설 기업
적용 범위	과밀억제권역 외 모든 지역	인구감소지역에 한함(89개 시·군·구)

- 수도권 경제 집중도 완화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개정前)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정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 (개정 前)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
 - ↳ (개정 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적용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은 제외
-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합리화